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시티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정정공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5.02.19.)의 내용 중 일부를 2025.02.20.일자로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 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 정정공고 내용

■ 교육시설 관련

정정 전(14p)

정정 후(14p)

■ 교육시설 관련

- ※ 본 아파트는 울포초 통학구역에 해당되며 입주 초등학생은 울포초에 배치 예정임
- ※ 본 아파트 입주 중학생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설립이 확정된 중학교에 배치될 예정이며, 민세중, 해창중, 고덕9중(2027. 3. 개교 예정)이 있습니다. 중학교 신입생은 컴퓨터 전산 주철 방식으로 배정되며, 중학교(구)지정은 매해 전년도에 확정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배정일정 및 방법은 경기도평택지원청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주후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본 아파트 입주 예정인 고등학생은 평택 내 기존 고등학교(21교)와 설립이 확정되어 추진 중인 4교(가칭)충죽고 2026.3. 개교 예정, (가칭)화양2고 2027. 3. 개교 예정, (가칭)고덕6고 및 송탄고 2028. 3. 개교 예정)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 ※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설립 계획된 학교(공립단설유치원 포함)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실시규칙」에 따른 투자심사에서 승인되어야 설립 추진이 가능하고 공동주택 인근의 모든 학교(공립단설유치원 포함) 통지가 설립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학교설립계획 보류(취소), 개발(실시)계획 변경, 학생 수용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주후 변경 또는 해제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에 확인 바랍니다.
- ※ 현재까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설립이 확정된 학교는 아래와 같으며, 개교예정시기는 기상상황, 공사추진일정, 기타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학교명	개교(예정)시기
유	평택고덕유(고덕2유)	2021. 3.
	함박유(고덕8유)	2021. 9.
	울포송유(고덕1유)	2025. 3.
초	울포초(고덕1초)	2023. 9.
	충죽초(고덕2초)	2020. 3.
	민세초(고덕4초)	2024. 9.
	고덕초(고덕10초)	2022. 3.
	해창초(고덕11초)	2024. 9.
중	고덕합박초(고덕13초)	2025. 3.
	(가칭)고덕3초	2028. 3.
	민세중(고덕3중)	2023. 3.
	해창중(고덕8중)	2024. 9.
	(가칭)고덕9중	2027. 3.
고	송탄고(고덕3고)	2025. 3.
	(가칭)고덕6고	2028. 3.

※ 단지 인근 학교설립으로 인하여 인접동의 경우 학교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교육시설 관련

- ※ 본 아파트는 울포초 통학구역에 해당되며 입주 초등학생은 울포초에 배치 예정임
- ※ 본 아파트 입주 중학생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설립이 확정된 중학교에 배치될 예정이며, 민세중, 해창중, 고덕9중(2027. 3. 개교 예정)이 있습니다. 중학교 신입생은 컴퓨터 전산 주철 방식으로 배정되며, 중학교(구)지정은 매해 전년도에 확정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배정일정 및 방법은 경기도평택지원청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주후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본 아파트 입주 예정인 고등학생은 평택 내 기존 고등학교(21교)와 설립이 확정되어 추진 중인 4교(가칭)충죽고 2026.3. 개교 예정, (가칭)화양2고 2027. 3. 개교 예정, (가칭)고덕6고 및 송탄고 2028. 3. 개교 예정)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 ※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설립 계획된 학교(공립단설유치원 포함)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실시규칙」에 따른 투자심사에서 승인되어야 설립 추진이 가능하고 공동주택 인근의 모든 학교(공립단설유치원 포함) 통지가 설립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학교설립계획 보류(취소), 개발(실시)계획 변경, 학생 수용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주후 변경 또는 해제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에 확인 바랍니다.
- ※ 현재까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설립이 확정된 학교는 아래와 같으며, 개교예정시기는 기상상황, 공사추진일정, 기타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학교명	개교(예정)시기
유	평택고덕유(고덕2유)	2021. 3.
	함박유(고덕8유)	2021. 9.
	울포송유(고덕1유)	2025. 3.
초	울포초(고덕1초)	2023. 9.
	충죽초(고덕2초)	2020. 3.
	민세초(고덕4초)	2024. 9.
	고덕초(고덕10초)	2022. 3.
	해창초(고덕11초)	2024. 9.
중	고덕합박초(고덕13초)	2025. 3.
	(가칭)고덕3초	2028. 3.
	민세중(고덕3중)	2023. 3.
	해창중(고덕8중)	2024. 9.
	(가칭)고덕9중	2027. 3.
고	송탄고(고덕3고)	2025. 3.
	(가칭)고덕6고	2028. 3.

※ 단지 인근 학교설립으로 인하여 인접동의 경우 학교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계약취소주택으로 최초 계약 당시 선택되었던 발코니 확장 및 추가옵션품목을 승계하는 조건인바, 청약 시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 031-613-6313)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거주요건	재당첨제한
민영	비규제지역	경기도 평택시 거주자	10년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없음	적용	공공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5.02.19.(수)	2025.02.24.(월)	2025.02.25.(화)	2025.02.28.(금)	2025.03.06.(목)	2025.03.10.(월)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12.1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계약취소주택,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이하 "계약취소주택"이라 함)을 사업주체가 취득하여 재공급 하기 위한 공고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특별공급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각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일반공급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계약취소주택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공급질서교란자 또는 전매제한 위반자)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부적격 당첨자)은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됩니다.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동일 주택형 내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단, 금회 일반공급 배정세대수가 없는 주택형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지 않음).

■ 주택형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분양사무실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다만, 제19조제5항 및 제47조의3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과의 계약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2.19.(수)**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5930003**입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08.19.(수)**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0001001**이므로, 본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는 (주)유리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들어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urich.co.kr>)
- 본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제외)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특별공급접수	일반공급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5.02.24.(월)	2025.02.25.(화)	2025.02.28.(금)	2025.03.06.(목)	2025.03.10.(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 분양사무소 (주소: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대로 99 어반그로브몰 2층 2123호)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배우자도**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경기도 평택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2020.09.16.)**로부터 3년간 적용되며, 기산일 기준 제한기간이 초과되어 현재 전매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평택시 주택과 - 제6283호(2025.02.18.)**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대로 99,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스티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49층 3개동 총 665세대 중 계약취소주택 2세대 [특별공급 1세대(다자녀가구 1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5년 3월 예정 (본 주택은 준공된 아파트로 금회 공급하는 세대의 입주시기는 분양대금 및 추가선택 품목(발코니확장, 플러스 유상옵션, 가전옵션) 대금 등 입주시 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금액에 대하여 완납 후 입주 가능)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다자녀 가구	계	
2025930003	01	084.1820	84	84.1820	31.7446	115.9266	46.8711	162.7977	31.9267	1	1	1	-
	02	090.3115	90	90.3115	33.5512	123.8627	50.2839	174.1466	34.2514	1	-	-	1
	합 계									2	1	1	1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84	합 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	1
합 계	1	1

※ 특별공급대상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공급금액표

(단위 : 세대, 원)

주택형 (약식표기)	동호	층구분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	잔금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10%	90%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84	0101-3602	36층	1	221,752,300	289,197,700	-	510,950,000	51,095,000	459,855,000
90	0102-2701	27층	1	216,487,501	275,529,545	27,552,954	519,570,000	51,957,000	467,613,000

- 본 아파트는 준공이 완료되어 아파트 공급금액 외에도 기 시공된 발코니 확장, 플러스 옵션, 가전 옵션 금액을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형 표기방식을 주거전용면적으로 표기하였으나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 면적합산 시 소수점 자리에서 단수조정으로 계산한 값이 적용되어 소수점 자리로 산정하였으며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관리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 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세대별 대지 지분은 공동주택의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 분양금액은 계약금, 잔금의 순으로 납부하며 잔금은 실입주일(키볼출일 또는 입주증 발급일 중 빠른 날)전에 완납하셔야 합니다. 잔금 납부 약정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최초 은행 영업일을 납부일로 합니다.(잔금 연체로 인한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 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주택은 입주 단지로 중도금은 없으며 입주기간 내 잔금을 납부 하여야 하며, 청약전 본인의 대출가능여부, 대출한도, 자금계획 등을 면밀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 이후 개인별 대출한도·대출불가, 자금사정 등의 사유로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으며 사업주체 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급 금액 납부 일정**

- 발코니 확장 비용은 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하며, 해당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에 따른 유의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20.08.19.)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구분	주택형 (약식표기)	동호	공급대금	계약금	잔금
				10%	90%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1	84	0101-3602	8,170,000	817,000	7,353,000
2	90	0102-2701	7,200,000	720,000	6,480,000

■ **플러스 옵션(가전 옵션 포함) 공급 금액 납부 일정**

- 플러스 옵션(가전 옵션 포함)의 비용은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 비용과 별도로 부담해야하며, 해당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본 아파트 공정상 가전옵션 선택품목의 설치가 완료되어 상기 가전옵션에 대한 계약이 필수이며, 기 설치된 가전옵션 외에 품목의 추가 및 기존계약의 변경이 불가합니다.
- 상기 가전옵션 선택품목은 설치가 완료된 품목이므로 계약체결 이후 계약해제는 불가합니다.
- 상기 가전옵션 선택품목은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세 내용은 가전옵션 선택품목 계약서에 기재하오니 계약체결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외에 가전옵션 선택품목 관련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2020.08.19.)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구분	주택형 (약식표기)	동호	구분	공급대금	계약금	잔금
					10%	90%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1	84	0101-3602	시스템 에어컨(총5개소) 거실1, 주방1, 침실1, 2, 3	7,700,000	770,000	6,930,000
			소계	7,700,000	770,000	6,930,000
2	90	0102-2701	시스템 에어컨(총3개소) 거실1, 주방1, 침실1	5,940,000	594,000	5,346,000
			공통선택품목(90) ①신발장,현관창고도어,시스템선반 ②발코니2 시스템선반,발코니1 빨래건조대 ③주방벽/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아일랜드식탁(엔지니어드 스톤) ④주방 냉장고장 ⑤주방팬트리(가구도어(유리),시스템선반 ⑥거실 뒷벽 1개소, 복도 1개소 픽처레일	10,090,000	1,009,000	9,081,000
			소계	16,030,000	1,603,000	14,427,000

■ 공급대금, 발코니확장, 플러스옵션(가전포함)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플러스 옵션의 비용은 분양가격 및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아파트 분양대금	하나은행	591-910068-32604	(주)하나자산신탁
발코니확장 / 플러스옵션(가전포함)	신한은행	56214577168862	현대건설(주)

- ※ 모든 공급금액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입금해야하며, 현금 수납은 불가합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세대별 인지대,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계약금, 잔금에 대하여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공급금액(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공사 및 플러스옵션(가전포함) 납부계좌는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충분히 확인하고 납부해야 하며, 상기 항목별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 입금하시고 입금증은 계약 시 제출 바랍니다.
(입금 예시 : 0101동 3602호 당첨자가 홍길동인 경우 입금자명 '01013602홍길동')
- ※ 타인 명의 등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공급대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 등의 처리가 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모든 공급금액 중 계약금, 잔금은 약정된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회차별 지정 계약 기간 내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입금자 중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고,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환불시기 방법 등은 추후 통보)
- ※ 잔금 납부기일 이전 선납을 하는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 전자수입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또는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사본 첨부)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 이므로 분양계약(전매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와 발코니 확장 계약 등 추가선택품목 계약에 따른 인지세를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제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이며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 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4 특별공급

구분	내용									
공급기준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p> <p>※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p>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p> <p>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처리방법</th> </tr> </thead> <tbody> <tr> <td>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 <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 </tr> <tr> <td rowspan="2">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 <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 </tr> <tr> <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 <td>모두 부적격 처리</td> </tr> </tbody> </table>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p>										
무주택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p> <p>-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p>									

4-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구분	내용
대상자	<p>■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p> <p>-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다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p> <p>■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p> <p>-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p>
당첨자 선정방법	<p>■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p>

5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6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취소후재공급 → 주택명 및 주택형 등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02.28.(금) ~ 2025.03.09.(일)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일시 : 2025.02.28.(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정당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안내**

- 모든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당첨자로 관리)로 간주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대상 및 제출 일정은 추후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구비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이어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구비서류(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기간내 제출 / 공동서류와 당첨 유형별 해당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특별, 일반 공급 포함)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배우자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공급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등재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당첨된 경우 - 군복무기간(25년 이상)을 명시
	○	전세피해자 확인서류	본인 또는 세대원	·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 받아 소유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 단, 낙찰 주택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① 해당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낙찰 증빙서류 : 매각허가결정서 사본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사본 ③ 해당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④ 채권자의 확인서류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임신진단서 (출산의 경우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의 경우(양식 : 분양사무실 비치)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직계비 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18세 이상 자녀가 미혼으로 미성년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자격요건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혼일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분양사무실 비치)

8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공급	※ 일시 : 2025.02.28.(금)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 2025.03.06.(목) ※ 장소 :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대로99 어반그로브몰 2층 2123호	※ 일시 : 2025.03.10.(월) ※ 장소 :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대로99 어반그로브몰 2층 2123호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및 소득·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계약체결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서류유형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시	신분증	○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추가 개별통지 서류		○	-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용도 : 아파트계약용 ※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 본인계약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인감도장	○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시 서명으로 대체
	계약금(무통장 입금증)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 ○		- -	· 분양사무실에서는 현금 수납 불가.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이체 · 분양사무실에 비치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	· 분양사무실에 비치 ※ 거래가격 6억원 이상 계약시 신고의무
대리인 계약시 추가제출 서류 (본인의 모두 제3자)	계약자(당첨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본인	· 용도 : 아파트계약 위임용 ※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 계약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대리계약불가
	위임장		○	-	· 분양사무실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인장		○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 상기 서류는 금회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성명 및 관계, 과거 주소 변동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을 포함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공급신청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당첨자는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됨.
 - 상기 기준에 따라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일반공급은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함.
- ※ 청약접수 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은 취소됨. (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함.
-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 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을 중복 청약하여(특별공급 중복청약은 불가)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함.
-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정당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음.
-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음.
-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시공사, 국가기관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등에 준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3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교육시설 관련

- ※ 본 아파트는 울포초 통학구역에 해당되며 입주 초등학생은 울포초에 배치 예정임
- ※ 본 아파트 입주 중학생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설립이 확정된 중학교에 배치될 예정이며, **민세중**, 해창중, 고덕9중(2027. 3. 개교 예정)이 있습니다. 중학교 신입생은 컴퓨터 전산 추첨 방식으로 배정되며, 중학군(구)지정은 매해 전년도에 확정·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배정일정 및 방법은 경기도평택지원청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추후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본 아파트 입주 예정인 고등학생은 평택 내 기존 고등학교(21교)와 설립이 확정되어 추진 중인 4교((가칭)용죽고 2026.3. 개교 예정, (가칭)화양2고 2027. 3. 개교 예정, (가칭)고덕6고 및 송담고 2028. 3. 개교 예정)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 ※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설립 계획된 학교(공립단설유치원 포함)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른 투자심사에서 승인되어야 설립 추진이 가능하고 공동주택 인근의 모든 학교(공립단설유치원 포함) 용지가 설립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학교설립계획 보류(취소), 개발(실시)계획 변경, 학생 수용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추후 변경 또는 해제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에 확인 바랍니다.
- ※ 현재까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설립이 확정된 학교는 아래와 같으며, 개교예정시기는 기상상황, 공사추진일정, 기타 등의 사유로 변경될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학교명	개교(예정)시기
유	평택고덕유(고덕2유)	2021. 3.
	함박유(고덕8유)	2021. 9.
	울포숲유(고덕1유)	2025. 3.
초	울포초(고덕1초)	2023. 9.
	종덕초(고덕2초)	2020. 3.
	민세초(고덕4초)	2024. 9.
	고덕초(고덕10초)	2022. 3.
	해창초(고덕11초)	2024. 9.
	고덕함박초(고덕13초)	2025. 3.
	(가칭)고덕3초	2028. 3.
중	민세중(고덕3중)	2023. 3.
	해창중(고덕8중)	2024. 9.
	(가칭)고덕9중	2027. 3.
고	송탄고(고덕3고)	2025. 3.
	(가칭)고덕6고	2028. 3.

※ 단지 인근 학교설립으로 인하여 인접동의 경우 학교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20.08.19.)을 확인하시어 모든 유의사항 및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주택은 공사 완료된 상태에서 계약 취소분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하는 아파트로, 기 설치된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에 대해 추가 · 변경 · 취소 등을 요구하실 수 없으니, 이점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아파트는 준공 및 입주 완료되었으므로 설계변경 또는 마감사양 등 시공상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잔금 지급 전 하자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주차장 출입 가능한 제한 높이 : 차량 진출입구 및 주차통로는 2.7m 이상, 주차구획은 2.1m 이상 (공동주택 주차장_지하 2층)
-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센터), 작은도서관 등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분	회사명	감리금액	사업자등록번호
건축	(주)케이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3,882,861,400 (VAT포함)	127-81-60942
전기	(주)선진이엔지	1,095,430,818 (VAT포함)	607-81-75558
소방/통신	(주)서광이에프	682,000,000 (VAT포함)	232-81-01003

■ 친환경 건축물 성능수준 표기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제3항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지역난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가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3호)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시공사
상호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유리치	현대건설(주)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로 437, 4층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대표번호	02-3287-4600	031-613-6313	1577-7755
등록번호	110111-1714818	134811-0214437	110111-0007909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공동주택 성능등급의 표시

<h3>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h3> <p>■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위한 규칙(별지 제 4호 서식) 개정(2017.1.20)</p> <p>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p> <table border="1"> <tr> <td>건축물 개요</td> <td>인증번호</td> </tr> <tr> <td>1. 건축물명 : 필스타이론 고대 스키아사이드</td> <td>24-204-11-018</td> </tr> <tr> <td>2. 건축연도 : 20240327</td> <td>평가자 : 박정희</td> </tr> <tr> <td>3. 주소 : 경기 용인시 수지구 고기로 99</td> <td>인증기관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td> </tr> <tr> <td>4. 층 수 : 지상 2층, 지하 4층(499.22㎡)</td> <td>유효기간 : 2024.05.28 ~ 2027.05.28</td> </tr> <tr> <td>5. 용도 : (109)17(000)14</td> <td>유효기간 : 2024.05.28 ~ 2027.05.28</td> </tr> <tr> <td>6. 용적률 : (109)17(000)14</td> <td>인증등급 : 1등급</td> </tr> <tr> <td>7. 공사시공자 : (주)현대건설(주)</td> <td></td> </tr> <tr> <td>8. 공사감리자 : (주)에이치지엔지니어링(주)공사감리사부소</td> <td></td> </tr> </table> <table border="1"> <tr> <th>구분</th> <th>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m²-yr)</th> <th>단위면적당 CO2 배출량 (kg/m²-yr)</th> </tr> <tr> <td>냉방</td> <td>0.0</td> <td>0.0</td> </tr> <tr> <td>난방</td> <td>29.3</td> <td>5.1</td> </tr> <tr> <td>조명</td> <td>30.7</td> <td>31.7</td> </tr> <tr> <td>냉난방</td> <td>12.5</td> <td>11.2</td> </tr> <tr> <td>합계</td> <td>62.7</td> <td>36.2</td> </tr> </table> <p>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p>	건축물 개요	인증번호	1. 건축물명 : 필스타이론 고대 스키아사이드	24-204-11-018	2. 건축연도 : 20240327	평가자 : 박정희	3. 주소 : 경기 용인시 수지구 고기로 99	인증기관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4. 층 수 : 지상 2층, 지하 4층(499.22㎡)	유효기간 : 2024.05.28 ~ 2027.05.28	5. 용도 : (109)17(000)14	유효기간 : 2024.05.28 ~ 2027.05.28	6. 용적률 : (109)17(000)14	인증등급 : 1등급	7. 공사시공자 : (주)현대건설(주)		8. 공사감리자 : (주)에이치지엔지니어링(주)공사감리사부소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m²-yr)	단위면적당 CO2 배출량 (kg/m²-yr)	냉방	0.0	0.0	난방	29.3	5.1	조명	30.7	31.7	냉난방	12.5	11.2	합계	62.7	36.2	<h3>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h3> <p>■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개정(2016. 7. 27)</p> <p>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택명: 필스타이론 고대 스키아사이드 / 이원호브 신청자: 유리치건설 대지위치: 경기도 평택시 고덕로64길14지구 Ebc-10L 성능등급 <table border="1"> <tr> <td>가. 소용 관련 등급</td> <td>성능등급</td> </tr> <tr> <td>1. 광양수직류 차단성능</td> <td>***</td> </tr> <tr> <td>2. 방충격벽 차단성능</td> <td>**</td> </tr> <tr> <td>3. 차음 단열재의 차단성능</td> <td>***</td> </tr> <tr> <td>4. 공동주택도로, 복도에 대한 실내·외 소용량</td> <td>***</td> </tr> <tr> <td>5. 화장실 관배수 소용</td> <td>**</td> </tr> </table> <table border="1"> <tr> <td>나. 구조 관련 등급</td> <td>성능등급</td> </tr> <tr> <td>1. 내구성</td> <td>**</td> </tr> <tr> <td>2. 기밀성</td> <td>***</td> </tr> <tr> <td>3. 수리용이성 전후부부</td> <td>**</td> </tr> <tr> <td>4. 수리용이성 공중부부</td> <td>**</td> </tr> </table> <table border="1"> <tr> <td>다. 환경 관련 등급</td> <td>성능등급</td> </tr> <tr> <td>20. 인제된 녹지율 조성</td> <td>해당없음</td> </tr> <tr> <td>21. 지점지점 녹지율</td> <td>**</td> </tr> <tr> <td>22. 생태친화성</td> <td>*</td> </tr> <tr> <td>23. 비도랑 조성</td> <td>해당없음</td> </tr> <tr> <td>24. 실내외기 오염물질 저감용 차폐막 적용</td> <td>해당없음</td> </tr> <tr> <td>25. 차폐막 적용률</td> <td>***</td> </tr> <tr> <td>26. 단열재의 공기침투 차단</td> <td>***</td> </tr> <tr> <td>27. 차폐막도열장차폐 설치 수준</td> <td>**</td> </tr> </table> <p>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p>	가. 소용 관련 등급	성능등급	1. 광양수직류 차단성능	***	2. 방충격벽 차단성능	**	3. 차음 단열재의 차단성능	***	4. 공동주택도로, 복도에 대한 실내·외 소용량	***	5. 화장실 관배수 소용	**	나. 구조 관련 등급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기밀성	***	3. 수리용이성 전후부부	**	4. 수리용이성 공중부부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등급	20. 인제된 녹지율 조성	해당없음	21. 지점지점 녹지율	**	22. 생태친화성	*	23. 비도랑 조성	해당없음	24. 실내외기 오염물질 저감용 차폐막 적용	해당없음	25. 차폐막 적용률	***	26. 단열재의 공기침투 차단	***	27. 차폐막도열장차폐 설치 수준	**	<h3>녹색건축 인증서</h3> <p>녹색건축 인증서</p> <p>인증번호: 24-204-11-018-7</p> <p>유효기간: 2024.07.05 ~ 2029.07.04</p> <p>이 건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우량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2024년 7월 5일</p> <p>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p>	<h3>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서</h3> <p>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서</p> <p>인증번호: 2024-01-094 호</p> <p>이 건물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평가되었음을 인증합니다.</p> <p>※ 이 인증서는 2020년 01월 인증기준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p> <table border="1"> <tr> <td>신청인</td> <td>이름</td> <td>주식회사 유리치</td> </tr> <tr> <td></td> <td>주소</td> <td>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로 437, (고기동)</td> </tr> <tr> <td>건축물</td> <td>이름</td> <td>필스타이론 고대 스키아사이드</td> </tr> <tr> <td></td> <td>주소</td> <td>경기도 평택시 고덕로 2681-1</td> </tr> <tr> <td>인증내용</td> <td>구분</td> <td><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파트 <input type="checkbox"/> 업무시설 <input type="checkbox"/> 오피스텔 <input type="checkbox"/> 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도시형생활주택</td> </tr> <tr> <td></td> <td>인증등급</td> <td><input checked="" type="checkbox"/> 초고속정보통신건물 <input type="checkbox"/> 특등급 <input type="checkbox"/> 1등급 <input type="checkbox"/> 2등급</td> </tr> <tr> <td></td> <td>인증기준</td> <td><input checked="" type="checkbox"/> 초고속정보통신건물 <input type="checkbox"/> AAA(5G) <input type="checkbox"/> AA <input type="checkbox"/> A</td> </tr> <tr> <td></td> <td>인증유효기간</td> <td>2024년 12월 10일 ~ 2029년 12월 09일</td> </tr> </table> <p>2024년 12월 10일</p> <p>서울전파관리소장</p>	신청인	이름	주식회사 유리치		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로 437, (고기동)	건축물	이름	필스타이론 고대 스키아사이드		주소	경기도 평택시 고덕로 2681-1	인증내용	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파트 <input type="checkbox"/> 업무시설 <input type="checkbox"/> 오피스텔 <input type="checkbox"/> 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도시형생활주택		인증등급	<input checked="" type="checkbox"/> 초고속정보통신건물 <input type="checkbox"/> 특등급 <input type="checkbox"/> 1등급 <input type="checkbox"/> 2등급		인증기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초고속정보통신건물 <input type="checkbox"/> AAA(5G) <input type="checkbox"/> AA <input type="checkbox"/> A		인증유효기간	2024년 12월 10일 ~ 2029년 12월 09일
건축물 개요	인증번호																																																																																																						
1. 건축물명 : 필스타이론 고대 스키아사이드	24-204-11-018																																																																																																						
2. 건축연도 : 20240327	평가자 : 박정희																																																																																																						
3. 주소 : 경기 용인시 수지구 고기로 99	인증기관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4. 층 수 : 지상 2층, 지하 4층(499.22㎡)	유효기간 : 2024.05.28 ~ 2027.05.28																																																																																																						
5. 용도 : (109)17(000)14	유효기간 : 2024.05.28 ~ 2027.05.28																																																																																																						
6. 용적률 : (109)17(000)14	인증등급 : 1등급																																																																																																						
7. 공사시공자 : (주)현대건설(주)																																																																																																							
8. 공사감리자 : (주)에이치지엔지니어링(주)공사감리사부소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m²-yr)	단위면적당 CO2 배출량 (kg/m²-yr)																																																																																																					
냉방	0.0	0.0																																																																																																					
난방	29.3	5.1																																																																																																					
조명	30.7	31.7																																																																																																					
냉난방	12.5	11.2																																																																																																					
합계	62.7	36.2																																																																																																					
가. 소용 관련 등급	성능등급																																																																																																						
1. 광양수직류 차단성능	***																																																																																																						
2. 방충격벽 차단성능	**																																																																																																						
3. 차음 단열재의 차단성능	***																																																																																																						
4. 공동주택도로, 복도에 대한 실내·외 소용량	***																																																																																																						
5. 화장실 관배수 소용	**																																																																																																						
나. 구조 관련 등급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기밀성	***																																																																																																						
3. 수리용이성 전후부부	**																																																																																																						
4. 수리용이성 공중부부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등급																																																																																																						
20. 인제된 녹지율 조성	해당없음																																																																																																						
21. 지점지점 녹지율	**																																																																																																						
22. 생태친화성	*																																																																																																						
23. 비도랑 조성	해당없음																																																																																																						
24. 실내외기 오염물질 저감용 차폐막 적용	해당없음																																																																																																						
25. 차폐막 적용률	***																																																																																																						
26. 단열재의 공기침투 차단	***																																																																																																						
27. 차폐막도열장차폐 설치 수준	**																																																																																																						
신청인	이름	주식회사 유리치																																																																																																					
	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로 437, (고기동)																																																																																																					
건축물	이름	필스타이론 고대 스키아사이드																																																																																																					
	주소	경기도 평택시 고덕로 2681-1																																																																																																					
인증내용	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파트 <input type="checkbox"/> 업무시설 <input type="checkbox"/> 오피스텔 <input type="checkbox"/> 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도시형생활주택																																																																																																					
	인증등급	<input checked="" type="checkbox"/> 초고속정보통신건물 <input type="checkbox"/> 특등급 <input type="checkbox"/> 1등급 <input type="checkbox"/> 2등급																																																																																																					
	인증기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초고속정보통신건물 <input type="checkbox"/> AAA(5G) <input type="checkbox"/> AA <input type="checkbox"/> A																																																																																																					
	인증유효기간	2024년 12월 10일 ~ 2029년 12월 09일																																																																																																					

■ 관리형 토지신탁

- 본 공급물건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유리치, 시행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 및 시공사 현대건설(주), 대출금융기관인 우선수익자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급계약에서 시행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은 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이거 신탁업무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한도내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본 공급계약으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유리치가 부담하고 있음을 인지합니다.
- 본 공급물건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 바,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유리치와 시행수탁자 (주)하나자산

신탁 간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되는 경우(개별 수분양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 포함), 본 사업상 시행자의 지위에 기한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유리치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이에 따라 시행수탁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공급계약서 변경 등 별도의 조치없이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유리치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됩니다.

- ④ 분양계약자는 본 분양물건이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하자보수와 관련된 모든 책임이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유리치와 시공사인 현대건설㈜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⑤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상환, 기타사업비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⑥ 본 모집공고 및 본 공급계약상 내용 외 수분양자와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 ⑦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 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문의 : 031-613-6313 (평일 10:00~16:00, 주말·공휴일·점심시간(11:30~13:00)제외 / 통화량이 많을 경우 전화연결이 지연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분양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공고와 분양계약서상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분양계약서를 우선 적용합니다.